

이 안내서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후속조치인 과태료 부과 업무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. 동 안내서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,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는 경우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##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발췌)

- 제7판 -

2023. 1. 30.



중앙방역대책본부



## 【주요 개정사항】

목차	구분	주요 개정사항
II. 마스크 착용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	제6판	<p>㉑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</p> <p>❶ 의무화 장소·시설·대상</p> <p>○ (마스크 착용 의무)</p> <p>- 실내* 전체</p> <p>* 실내란 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</p> <hr/> <p>㉓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</p> <p>○ (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집, 개인 차량 등 사적인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</li> <li>• 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</li> </ul>
	제7판	<p>㉑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</p> <p>❶ 의무화 장소·시설·대상</p> <p>○ (마스크 착용 의무)</p> <p>-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, 의료기관·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*</p> <p>* 실내란 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</p> <hr/> <p>㉓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</p> <p>○ (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·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</li> <li>• 다인 침실·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·입소자, 상주간병인, 상주보호자</li> <li>• 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와 사적인 공간에서 잠을 잘 때</li> </ul>

# 목 차

I. 개요 .....	1
1. 추진 배경 .....	1
2. 법적 근거 .....	1
3. 행정명령 관련 .....	2
4. 참고 및 유의사항 .....	2
II. 마스크 착용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 .....	3
1.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.....	3
2.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.....	6
3.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.....	8
▷ 붙임 ◁	
1.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.....	9
2.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: 마스크 착용 .....	11
3.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 .....	13
4.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.....	15

# I 개요

## ① 추진 배경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약칭: 감염병예방법, 이하 “법”으로 기재)」 개정(‘20.8.12 개정, 10.13 시행)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으며,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

## ② 법적 근거

- 법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 제2호의2, 제2호의3, 제2호의4

### 감염병예방법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

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,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. (생략)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2의3. 버스·열차·선박·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2의4.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

- 법 제83조(과태료) 제2항, 제4항, 제5항 (개정 ‘20.8.12, 시행 ‘20.10.13)

### 감염병예방법 제83조(과태료)

① (생략)

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③ (생략)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, 관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### ③ 행정명령 관련

- (행정명령권자) 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
[참고] 감염병예방법 상위 조항의 “시·도지사” 등 약칭

제7조(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) (①~②항 생략)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와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기본계획에 따라... (이하생략)

- (과태료부과권자)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
- (행정명령기간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 “경계”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

### ④ 참고 및 유의사항

-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~제2호의4에 따른 대상자별 정의
  - (관리자) 시설·장소의 관리·총괄 책임자
  - (운영자) 시설·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
  - (이용자) 해당 시설·장소, 운송수단, 지역에 출입·방문한 모든 자\*
- \* 관리자·운영자, 종사자 등을 포함
- “마스크 착용 의무” 행정명령 시 명확한 근거법령 명시 필요
  - 특정 장소·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로, 운송수단(대중교통)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에 따른 방역지침의 일환임을 명시하여 발령 필요
  -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명령하는 경우는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로 발령 필요

## ①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

### ① 의무화 장소·시설·대상

#### ○ (마스크 착용 의무)

#### -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,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\*

\* 실내란 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

#### ■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

\* (제외장소) 사무동·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(단,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)

#### 1. 요양병원·장기요양기관

○ 의료법(제3조)에 따른 **요양병원**

○ 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2조)에 따른 **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**: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, 주야간보호기관, 단기보호기관

#### 2. 정신건강증진시설

○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"정신건강복지법"으로 기재)(제3조)에 따른 **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**

\* (제외시설)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(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), 국립정신병원

○ 정신건강복지법(제3조)에 따른 **정신요양시설**

○ 정신건강복지법(제3조)에 따른 **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** :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, 지역사회전환시설, 중독자재활시설, 종합시설(입소시설)

\* (제외시설)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(주간재활시설, 직업재활시설,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, 생상품판매시설, 종합시설(비입소시설))

#### 3. 장애인복지시설

○ 장애인복지법(제58조)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**입소형 시설** : 장애인 거주시설, 장애인 쉼터, 피해장애아동 쉼터

\* (제외시설) 지역사회 재활시설, 직업재활시설, 의료재활시설, 생상품 판매시설

■ 의료법(제3조)에 따른 **의료기관**

\* (제외장소) 사무동·연구동·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(진료·검사·치료·수납 등)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(단,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)

○ 지역보건법(제31조)에 따른 **보건소(보건의료원 포함), 보건지소**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(제2조)에 따른 **보건진료소** 포함

■ 약사법(제2조)에 따른 **약국**

■ **대중교통수단**

○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(제2조)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: **노선버스, 철도, 도시철도, 여객선, 도선**

- 해운법(제3조)에 따른 **해상여객운송사업**을 영위하는 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**해운법(제2조)에 따른 여객선** 포함

○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(제3조)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: **전세버스\*, 특수여객자동차, 일반택시, 개인택시**

\* 운송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통근, 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 포함

○ 항공사업법(제2조)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**항공안전법(제2조)에 따른 항공기**

- 지자체별 의무착용 장소,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

○ (**관리 의무**) **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에게 부과**

-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**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 부과**

★ **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**

< 참고: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>

① 코로나19 **의심 증상**이 있거나, 코로나19 **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** 경우

\* (코로나19 의심 증상) 인후통, 기침, 코막힘 또는 콧물, 발열 등

② 코로나19 **고위험군**이거나, 코로나19 **고위험군과 접촉하는** 경우

\* (코로나19 고위험군) 60세 이상 연령층, 면역저하자, 기저질환자 등

③ 최근 코로나19 **확진자와 접촉했던** 경우(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)

④ **환기가 어려운 3밀(밀폐·밀집·밀접) 실내 환경**에 있는 경우

⑤ **다수가 밀집한 상황**에서 함성·합창·대화 등 **비말 생성행위**가 많은 경우

※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

## ② 마스크 종류

-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‘의약외품’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등), 비말차단용 마스크(KF-AD),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
  - ‘의약외품’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
    - \* 단, ‘의약외품’ 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
    - \*\* 식약처 권고사항(’20.8.28일):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 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려,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(숨을 내 쉴 때(날숨)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)
- ‘의약외품’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·면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, 전자식 마스크\*도 가능 함
  - \*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
  - 단,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, 넥워머,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

## ③ 착용법 관련

-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
  -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
-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(nose wire)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

## ②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

### ① 대상별 과태료 금액

-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(행정명령 위반 당사자): 위반 횟수와 관계 없이 각각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(법 제83조제4항)
- 의무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: 과태료의 부과기준\*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(법 제83조제2항)

\* 1차 위반 50만원, 2차 위반 100만원, 3차 이상 위반 200만원

※ <참고>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[별표 3] 과태료의 부과기준

### ② 상황별 과태료 부과(예시, 1차 위반 시)

순번	위반 내용	행정명령	운영자 (또는 관리자)	이용자
1	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운영자 운영·관리 소홀	마스크 착용 명령(제2호의4) 해당 시설 방역수칙 준수명령 (제2호의2)	과태료 50만원	과태료 10만원
2	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운영자 운영·관리 적합	마스크 착용 명령(제2호의4) 해당 시설 방역수칙 준수명령 (제2호의2)	과태료 부과 없음	과태료 10만원
3	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	운송수단 방역수칙 준수명령 (제2호의3)	-	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각각 과태료 10만원

<참고> 음식점 종사자의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해석례(법무부, '21.2월)

- (질의) 음식점 등의 관리자가 식품 제조 등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지 않은 경우, 감염병예방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바, 이 때 당사자에게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수
- (해석)
  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관리자 등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,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, 「식품위생법」이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식품의 제조·가공·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시키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,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,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
  - 따라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「식품위생법」은 그 입법취지 및 목적이 서로 다르고,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과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것은 그 위반행위의 태양 역시 상이하므로, 사안은 당사자가 법적근거가 다른 두 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질서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각 근거법률에서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### ③ 감경 또는 증액 관련 참고사항

- 법 시행령 [별표3] 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의 감경 또는 늘려 부과할 수 있음
- 또한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등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

### ③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

#### ○ (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)

- 방역지침 취지 상 과태료 부과 예외인 경우

##### • 24개월 미만의 영유아

- 뇌병변·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
-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

-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라 부과되지 않는 경우

##### •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

- \* (질서위반행위규제법) 제9조(책임연령)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
#### ○ (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) 세면, 음식 섭취, 의료행위,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

##### •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·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\*과 있을 때

\* 다인 침실·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·입소자, 상주간병인, 상주보호자

-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
- 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와 사적인 공간에서 잠을 잘 때
- 수영장·목욕탕 등 물속·탕 안에 있을 때
- 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
- 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
-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(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),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 및 수어통역을 할 때
- 임명식, 협약식,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사진 촬영(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,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) 할 때
- 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실내에서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
-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(예: 항공기 조종사 등)
-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
- 원활한 공무수행(외교, 국방, 수사, 구조,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)을 위해 필요한 경우

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3] <개정 2022. 2. 9.>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3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"부과권자"라 한다)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- 1)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·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
  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 - 3)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이 법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과태료·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
  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라.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8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 - 2)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3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
  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 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(단위: 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아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83조 제2항	50	100	200
자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83조제4항제1호	10	10	
차.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83조 제4항제2호	10	10	

**2 마스크 착용**

< 개인방역 보조수칙 : 마스크 착용 >

**1]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**

- 마스크 착용, 손 씻기,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.
-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
-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'의약외품'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.
  - '의약외품 마스크'가 없을 경우 면(천)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**2]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**

-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입과 코를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.
-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(nose wire)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합니다.
- 마스크 내부에 마스크 가드,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-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.
-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. 만졌다면,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.
- 마스크를 잠시 벗어야 하면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하고, 마스크를 줄에 걸어 목걸이로 사용할 경우 마스크 안쪽 면이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쪽 면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- 환기가 어렵고 사람이 많아 비말감염의 우려가 있는 밀폐·밀집·밀접(3밀) 시설에서 사용한 마스크는 교체하는 것을 권고합니다.
  - 땀이나 물에 젖은 마스크는 세균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새 마스크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.
  -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, 어지러움,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개별 공간 또는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합니다.
-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귀에 거는 끈만 이용해 벗은 후 바깥면을 안쪽으로 접어 끈으로 감고 가능하면 소독제를 뿌린 후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.

### ③ 마스크 착용 의무·권고 상황 및 상황별 권고 마스크

#### <마스크 착용 의무·권고 상황>

-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,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.
-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.

#### <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>

-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,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
\* (코로나19 의심 증상) 인후통, 기침, 코막힘 또는 콧물, 발열 등
-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,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
\* (코로나19 고위험군) 60세 이상 연령층, 면역저하자, 기저질환자 등
-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(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)
- ④ 환기가 어려운 3밀(밀폐·밀집·밀접)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
-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·합창·대화 등 비밀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

- 고위험군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, 또는 감염 위험시설(3밀)·취약시설(요양병원 등)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권장합니다.

#### <상황별 권고 마스크>

상황		보건용 마스크		수술용 마스크	비밀차단용 마스크
		KF 94	KF 80		
의료 관련 상황	·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경우	필수	-	-	-
	· 코로나19 의심증상자이거나 의심증상자와 접촉할 때 ·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할 때	(우선) 권장		사용 가능	
생활 방역 상황	·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· 환기 어려운 3밀(밀폐·밀집·밀접) 환경인 경우	(우선) 권장		사용 가능	
	· 다수가 밀집해 비밀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	권장			

### ④ 마스크 착용 예외 가능 상황

- 집·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,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
※ 발열·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서 가정에서 고위험군(60세 이상, 기저질환자, 임신부 등)과 함께 생활하거나,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
- 음식 섭취, 수영·목욕, 세수·양치, 검진 등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

### ⑤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는 대상(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상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에 해당)

- ① 24개월 미만의 영유아, ② 뇌병변·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, ③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
※ 단, 아동 간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, 24개월 이상이라도 부모·보호자의 세심한 관찰·감독이 필요

※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예외상황 등 자세한 내용은 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” 참조

**<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>**

## ○ 법적근거,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

- (법적근거) 감염병예방법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, 제83조(과태료)
- (행정명령기간)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“**경계·심각**” 단계에서 **행정명령권자**(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)가 **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**
- (과태료 부과) **계도기간 1개월('20.10.13.~'20.11.12.)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**  
※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**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,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**
- (과태료 금액) 위반당사자 **10만원 이하**, 관리·운영자 **300만원 이하**(1차 50만원, 2차 100만원, 3차 이상 200만원)

## ○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·대상

- (착용 의무)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\*, 의료기관·약국 및 대중교통수단\*\*의 실내  
\*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: 요양병원·장기요양기관, 정신건강증진시설, 장애인복지시설  
\*\* 대중교통수단: 버스, 철도, 도시철도, 여객선, 도선, 택시, 항공기 등
- (관리 의무) **의무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는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침 게시 및 안내** 의무
- ★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

**<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>**

- ① 코로나19 **의심 증상**이 있거나, 코로나19 **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** 경우  
\* (코로나19 의심 증상) 인후통, 기침, 코막힘 또는 콧물, 발열 등
- ② 코로나19 **고위험군**이거나, 코로나19 **고위험군과 접촉하는** 경우  
\* (코로나19 고위험군) 60세 이상 연령층, 면역저하자, 기저질환자 등
- ③ 최근 코로나19 **확진자와 접촉했던** 경우(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)
- ④ **환기가 어려운 3밀(밀폐·밀집·밀접) 실내 환경**에 있는 경우
- ⑤ **다수가 밀집한 상황**에서 합성·합창·대화 등 **비말 생성행위**가 많은 경우

※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

## ○ 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법

- (마스크 종류) 식약처에서 ‘**의약외품**’ 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등), **비밀차단용 마스크(KF-AD)**, **수술용 마스크 강력 권고**, 그 외 천면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, 전자식 마스크 가능  
\*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
※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, 넥워머,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
- (착용법) 마스크는 **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**  
\*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

○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

<p><b>예외 대상자</b></p>	<p>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취지 상 과태료 부과 예외</p> <p>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부과되지 않음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4개월 미만인 영유아</li> <li>• 뇌병변·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</li> <li>•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</li> <li>• <b>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</b></li> <li>* (질서위반행위규제법) 제9조(책임연령)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</li> </ul>
<p><b>예외 상황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감염취약시설의 침실·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다인 침실·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·입소자, 상주간병인, 상주보호자</li> </ul> </li> <li>•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</li> <li>• 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</li> <li>• 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와 사적인 공간에서 잠을 잘 때</li> <li>• 수영장·목욕탕 등 물속·탕 안에 있을 때</li> <li>• 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</li> <li>•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</li> <li>•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(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),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 및 수어통역을 할 때</li> <li>• 임명식, 협약식,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사진 촬영(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,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) 할 때</li> <li>• 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실내에서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</li> <li>•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(예: 항공기 조종사 등)</li> <li>• 원활한 공무수행(외교, 국방, 수사, 구조,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)을 위해 필요한 경우</li> </ul>	



**KF94 마스크** ·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

**KF80이상 마스크**

- 기침, 목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
- 건강취약계층<sup>①</sup>과 기저질환자<sup>②</sup>가 다른사람과 접촉하는 경우

**비말차단용·수술용 마스크**

-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·더운 여름철·호흡이 불편한 경우에 사용이 편리

① 건강취약계층 노인, 어린이, 임산부, 만성질환자 등

② 기저질환자 만성 폐질환, 당뇨, 만성 신질환, 만성 간질환, 만성 심혈관질환, 혈액암, 항암치료암환자,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

미세입자 차단

호흡 용이성



마스크 착용 전 깨끗이 손 씻기



입과 코를 가리고, 틈이 없도록 착용



착용중 마스크 만지지 않기  
만진 후 깨끗이 손씻기



입만 가리는 착용



턱에 걸치는 착용



겉을 만지는 행위



코만 가리는 착용

- 카페나 음식점에서 음식 섭취 전·후나 대화 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
- 잠시 마스크를 벗어야 하면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합니다



**마스크 선택법**

식약처가 허가한 **의약외품**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

**마스크 폐기법**



마스크는 귀에 거는 끈만 이용해 벗은 후 바깥면을 안쪽으로 접어 끈으로 감고 소독제를 뿌려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

※ 소독제가 없는 경우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봉투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